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6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변경되는 내용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각각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일치 인용조문 변경 : 28건
 -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조례 26건
- 변경되는 위임내용 반영 : 1건
 -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 및 요건 완화에 따른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내용 변경
 - ※ 19세 이상 → 18세 이상 / 200명 이상의 연서 → 150명 이상의 연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2.01.13.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1.10.22. ~ 11.01.)(10일)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2) 규제심사 : 비규제[기획실-15550(2021.11.01.)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실-15550(2021.11.01.)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가족복지과-40233(2021.10.2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16조의2”를 “제130조”로 하고, 제3조제2항 제2호 중 “제9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며,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제4호 중 “제116조의2제2항”을 “제130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39조”를 “제47조”로 한다.

제3조(「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호 중 “제134조제1항”을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제16조제1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중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을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제5조(「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개정) 평창군조례·규

칙등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 중 “제26조제6항”을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제113조”를 “제126조”로 하며, 제14조제1항 중 “제114조”를 “제127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제6항”을 삭제하며, 제20조제1항 중 “제115조”를 “제128조”로 한다.

제8조(「평창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2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9조(「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2항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평창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2”를 “제7조”로 한다.

제11조(「평창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제3항”을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평창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를 “제117조”으로 한다.

제14조(「평창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의 개정) 평창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3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

정) 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90조”를 “제102조”로 한다.

제17조(「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142조”를 “제159조”로 한다.

제18조(「평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9조제2항 중 “제134조제1항”을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04조”를 “제117조”로 한다.

제20조(「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142조”를 “제159조”로 한다.

제21조(「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 및 제144조”를 “제117조 및 제161조”로 한다.

제23조(「평창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124조”를 “제139조”로 한다.

제24조(「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26조제2항”을 “제141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6조(「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04조제3항”을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제153조,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각종위원회”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의 심의·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p> <p>2. ~ 5.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략)</p> <p>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하여 구성하거나 이에 관한 준용규정을 둘 수 있다.</p> <p>1. (생략)</p> <p>2. 법 제9조제2항에서 예시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해당 조례에 따른 위원회</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 ----- ----- ----- 제130조-----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3조제2항----- ----- -----</p>

제4조(설치요건) ① (생략)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는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사위원회를 활용하여 지양하
거나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경
우에는 관련위원회와 통합 또는
그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절차) ① (생략)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그
신설·변경 또는 통합에 관한
의견을 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
로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4.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유사위원회의 활용 가능성

③ (생략)

제4조(설치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16조의2제2항-----

-----.

제5조(설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0조제4항-----

③ (현행과 같음)

□ 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회의 승인) 군수는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회의 승인) ----- ----- ----- -----제47조----- -----.

□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제15조제1항 ----- ----- -----

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납액의 합이 최근 3년 경상적일반재원 평균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 ----- ----- -----
--	--

□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제1항----- -----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u>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u> 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제21조제1항----- -----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

□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조례) 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p> <p>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p>	<p>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32조제6항----- ----- ----- -----제32조제6항----- ----- ----- ----- ----- ----- -----.</p> <p>제7조(공포방법) ----- ----- ---제32조제6항----- ----- ----- -----.</p>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비용추계서”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평창군의 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 -----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작성대상) ① (생략)</p> <p>②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3조(작성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p> <p>① ~ ③ (생략)</p> <p>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 -----.</p>

<p>② (생략)</p> <p>제17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제6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p>
<p>② (생략)</p> <p>제20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림면계촌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설치) ① --제128조-----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 평창군 반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7조제6항----- ----- -----.</p>

□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 설치 기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p> <p>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제1조(목적) ----- -----제7조제4항----- ----- ----- ----- -----.</p> <p>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7조제4항-----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평창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7조----- ----- -----.</p>

□ 평창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9조----- ----- -----.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7조제3항----- ----- ----- ----- ----- -----.

□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군의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7조----- ----- ----- ----- ----- -----.

□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p> <p>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지방자치법 <u>제4조의2제4항</u>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p> <p>3. ~ 6. (생략)</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p> <p>(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제7조제4항----- ----- -----</p> <p>3. ~ 6. (현행과 같음)</p>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명예군민의 권리)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게 지방자치법 <u>제13조제1항</u>에 따른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p>	<p>제5조(명예군민의 권리) ----- ----- -----제17조 제1항----- -----.</p>

□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기금"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p> <p>5. ~ 6.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제159조----- ----- -----.</p> <p>5. ~ 6. (현행과 같음)</p>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50조제1항----- ----- ----- ----- -----.</p>

제2조(정수)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선임하는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는 검사의견서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검사의견서에는 법 제1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회의 결산승인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조(정수) -----

-----제150조제1항-----

-----.

제9조(검사의견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50조제1항-----

-----.

□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역문화 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작은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7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117조-----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p>	<p>제11조(기금의 설치) ----- ----제159조----- ----- ----- ----- -----</p>

□ 평창군 군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 ----- ----- ----- ----- ----- -----제139조----- ----- -----.

□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 ----- -----제141조제2항----- ----- ----- ----- -----.

□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평창군 여성농업인”(이하 “여성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 ----- ----- -----제16조----- ----- -----.</p> <p>2. ~ 3. (현행과 같음)</p>

□ 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위탁운영) ① ----- ----- ----- -----제117조제3항----- ----- -----.</p> <p>② (현행과 같음)</p>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평창군의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53조, 제156조제1항----- ----- ----- ----- ----- -----.</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

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포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

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실장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065